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0028 제출연월일: 2025. 4. 2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「식품안전기본 법」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, 보건복지부차 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"국무총리"를 "국무조정실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국무총리는"을 "국무조정실장은"으로, "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"을 "식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·조정을"로, "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"를 "수립하여야"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"(식품안전정책위원회)"를 "(식품안전정책협의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"를 "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정책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원회"를 "협의회"로, "심의·조정한다"를 "협의·조정한다"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"(위원회의 구성 등)"을 "(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위원회"를 "협의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관계행정기관의장, 관계 공무원"을 "관계 공무원"으로, "위원회"를 "협의회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

람이 된다.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.

- 1. 교육부차관·농림축산식품부차관·보건복지부차관·해양수산부차 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
-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
- ③ 협의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간사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 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위원회"를 "협의회"로 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의 제목 "(전문위원회)"를 "(자문단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전문위원회"를 "자문단"으로 한다.

① 협의회는 식품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 중 "위원회 및 전문위원회"를 "협의회"로 한다.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위원회의 심의를"을 "협의회의 협의·조정을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"을 "협의회의 협의·조정을 거치는"으로, "위원회의 심의를 거칠"을 "협의회의 협의·조정을 거칠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위원회"를

"협의회"로, "심의"를 "협의·조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행한"을 "한"으로, "위원회"를 "협의회"로 한다.

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원회의 심의를"을 "협의회의 협의· 조정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행 제6조(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) 제6조(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)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 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 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 ----- 국무 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조정실장-----. ② 국무조정실장은 -----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 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식 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 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 ----- 식품안전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 정책협의회의 협의·조정을 --안전관리기본계획(이하 "기본 ----- 수립하여야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한 후 |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생 략) 제7조(식품안전정책위원회) ① 식 제7조(식품안전정책협의회) ① --품안전정책을 종합・조정하기 ----- <u>국무조정</u>실에 식품안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 안전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 정책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 라 한다)를 둔다. 다)----. ② <u>위원회</u>는 다음 각 호의 사항 ② <u>협의회</u>-----을 <u>심의·조정한다</u>. -- 협의·조정한다. 1. ~ 6. (생략) 1. ~ 6. (현행과 같음) 제8조<u>(위원회의 구성 등)</u> ① <u>위원</u> 제8조<u>(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)</u>

- <u>회</u>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- 1. 기획재정부장관·교육부장관 •법무부장관·농림축산식품 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환 경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·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 조정실장
- 2.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

<신 설>

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<u>관계행정기관의 장,</u>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 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1	협	의	회-	 	 	 		 _	_
				 	 	 	_		

-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 실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 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 다.
- 1. 교육부차관·농림축산식품부 차관·보건복지부차관·해양 수산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 전처차장
-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
- ③ 협의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간사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차장이 된다.

<u>4</u>	
<u>관계 공무원</u>	
	<u>협</u>
의회	- — —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 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위원의 임기와 의무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 간동안 재임한다.

② 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 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특 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 │ <삭 제> 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 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.

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
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- <u>협의회</u>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2조(전문위원회) ① 위원회는 제12조(자문단) ① 협의회는 식품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 |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

여	전문위원회를	둘	수	있다.
---	--------	---	---	-----

-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·기능·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.
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・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자료 및 조사·분석 요청)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식품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 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 나 제23조에 따른 시험·분석· 연구기관에 위해성평가에 필요 한 조사·분석·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전문가로	구성된	자문단을	둘
<u>수 있다.</u>			
② <u>자문단</u>	· — — — — ·		
<삭 제>			

제14조(자료 및 조사・분석	요청)
협의회	

제15조(긴급대응) ① (생 략)

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 산 · 판매등이 되고 있는 식품등 이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 해우려가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 급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긴급대응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는 것이 긴급대응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③ <u>위원회</u>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제출한 긴급대응방안을 지체 없이 <u>심의</u>하고 그 내용과 관련된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

제15조(긴급대응) ① (현행과 같
승)
②
협의회
<u>의 협의·조정을</u>
<u>협</u> 의회의 협의
<u>· 조정을 거치는</u>
<u>협의회의 협의·조정을 거</u>
<u>칠</u>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협의회
<u>협의·조정</u>

	공표	하여	야	한다
--	----	----	---	----

-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<u>행한</u>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<u>위원회</u> 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(생 략)

제20조(위해성평가) ① (생 략)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・2. (생략)
- ③ (생 략)

4
<u>한</u> -
협의회
⑤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위해성평가) ① (현행과
같음)
②
<u>협의회의 협의·조정을</u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